

PL법 바로알기

I.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합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체물에 한정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공업적으로 제조한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전기 등 의 무체물 및 부동산과 미가공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도 「전기 및 공업적으로 제조한 동산」에 한정하고 미가공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있지만, 럭셈부르크와 프랑스에서는 미가공된 농·수·축산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때 농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농약잔류량과 항생물질의 함유라는 농수축산물의 안전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할 때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U지침에서는 무체물이지만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을 동산에 한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에 까지 넓힐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제조물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어 소비자가 대량생산된 공업제조물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을 제조업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발전한 원칙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이 타당한 분야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적합

(표 1) 제조물의 범위

구 分	미국	유럽연합(EU)	일본·한국(1998년 시안)
동 산 포 함	공업적으로 제조된 동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전 기 포 함	포 함	제 외	포 함
부동산 원칙적으로 제 외	제 외	제 외	제 외
1차농수축산물 포 함	제 외(가맹국 선택)	제 외	제 외

한 제조물이며 일반적으로 최종 제조물인 동산이 대상으로 되어왔다.

동산은 부동산이외의 유체물이므로(우리 민법 제187조) 공업제조물, 가공품을 지칭하며 이들을 제조물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이다.

EU지침에서는 책임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을 자연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 한 모든 동산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하여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도 제조물에 대한 성질을 끌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먼트 제402조 A와 일본법에서도 동산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EC지침에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하지만 대량으로 건축 판매된 신축주택에 관해서는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도 있다.

2. 제조물 책임 주체(제조업자의 범위)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는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즉 배상책임을 부담할 주체로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점은 제조물책임에서 특이한 문제점이다.

그것은 현대상품경제체제가 현저하게 변모함에 따라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의 사업주체가 각각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완성품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종래부터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거론되었다.

완성품의 제조업자는 그 완성품 전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며 가령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된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제조업자는 제조를 영업으로 삼아 반복 계속하여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묻지 않는다.

2-2. 부품 원재료제조업자

결함이 있는 부품을 만든 부품제조업자의 책임이 문제로 되는데 부품제조업자도 제조물의 결함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기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가 완성품의 설계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이거나 그 부품 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EC지침에서나 일본법에서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2-3. 주문자상표 부착 제조업자(OEM)

또한 최근에는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OEM)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공급자인 진정한 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자로서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인 그 제조업자는 표시제조업자가 지시한 설계나 시방서에 따라서 제조한 경우에는 조립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제조한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OEM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공급자인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4.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면 제조업자로 간주되는 표시를 부착한 제조업자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물의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다 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부품의 제조업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책임은 이른바 외관이론에 의한 것이며,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 제400조에서 '타인에 의해 제조된 동산을 스스로의 제조물이라고 표시한 자는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완성품제조업자, 구성부품 제조업자도 이러한 표시제조업자와 함께 진정한 공급자인 제조업자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수입업자

외국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한 자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선 유통업자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매업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수입업자에 관해서는 자기 의사에 기인하여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 공급자인 점과 일반 소비자가 외국제조업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곤란한 점, 더구나 수입시 계약에 있어서 외국의 제조업자 내지 판매자에 대한 구상권(배상, 상환을 요구함)을 확보해 두면 수입업자 자신이 최종적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책임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EU지침, 일본법 등).

특히 국제화의 진전과 UR로 인한 국내시장의 개방은 외국제조업자가 직접 국내에 유통점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하게 될 때에는 국제 제조물 책임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국내소비자는 외국제조업자를 상대로 외국의 법정에서 직접소송을 하거나 우리나라

의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는 외국의 판결승인·집행등의 문제가 국제사법상 제기되게 된다.

2-6. 판매업자(공급업자)

판매업자(소매 도매업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에 의거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는 그 능력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제조업자와 다르며 검사나 시험에 의해 제조물의 결함을 명확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이러한 판매업자에게 엄격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 제402조 A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판매업자는 제조물의 유통구조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부담할 입장에 있다는 점

② 피해자로서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고 판매업자 특히 소매업자에게 밖에 사실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③ 판매업자는 보다 안전한 제조물을 만드는데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판매자에게 보충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판매업자는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또는 직접 제조물의 설계 제조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물기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보충적인 책임규정을 두어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결함

3-1. 결함의 정의

제조물책임에 있어 책임기준으로 새롭게 대두한 개념이 결함이다.

과실책임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책임요건이다.

이것에 대하여 엄격책임(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책임이론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은 제조물의 객관적인 성질상태인 결함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1-1. 결함과 하자의 구분

제조물책임에서 缺陷(defect, Fehler)은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瑕疵(flaw, Mangel)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defect)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하자(flaw)와의 개념 구별이 문제되기도 한다.

결함의 개념은 우리 민법의 조문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제조물책임을 논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하자라는 개념은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동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와 배상책임)에 나타나고 있다.

결함을 하자와 동일시하는 견해에서는 하자의 전제가 되는 물건의 품질 성능이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의 물건과 같은 품질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도달하여야 할 수준의 품질 성능을 의미한다고 이해함으로써 결함과 하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내지는 제품의 상품성에 대한 것과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으로 나눈다. 전자의 흠은 제조물의 성질이나 품질이 표준이 하인 것을 말하지만, 후자의 흠은 제조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상품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결함은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나 위

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볼으로써, 하자는 상품성의 결여이고 결함은 안전성의 결여라고 하여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필요한 상품성의 기준은 제조물의 공급가격,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설정법상 결함개념의 정립이 더욱 곤란하다.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을 과한다면 그것은 위험성을 가지는 제조물에 한정되어야 하며 안전한 구조의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상품성에 대한 불만이라면 현행 계약법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결함의 본질은 안전성의 결여, 즉 위험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2. 결함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

결함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1) 항에서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결함의 정의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EC지침에서는 “그 제조물의 표시. 그 제조물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용도, 그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

(6조 1항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나중에 보다 좋은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법에서는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및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제2조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선진국가의 규정이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제조물의 결함은 안전성을 결여한 위험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또한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제품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규범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결함의 유형

결함의 유형으로 보통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지시 경고상의 결함으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제품자체의 결함만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지시 경고상의 결함이 크게 다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판매팜플렛이나 선전광고, 판매원의 설명이 잘못 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3-2-1.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며 원래의 도면·제조방법대로 제조물이 제조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조상의 결함은 본래 품질검사의 단계에서 발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그러한 품질검사 체계에서 빠져나간 결함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이용자를 해치지 않도록 제조에 필요한 재료, 기계, 인사 배치, 그리고 작업방법 등 필요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가 적용되는 모든 작업 계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조물에 존재하지만 제조상의 결함은 개별 제조물에 존재한다.

3-2-2.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의 설계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이며 도면 설계서대로 제조물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안전장치를 결한 기계, 위험한 부작용을 숨긴 의약품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계에 기해 제조된 제조물 모두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제조업자에 대한 영향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소송

의 대부분이 이 설계상의 결함과 지시 경고상의 결함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3-2-3. 지시 경고상의 결함

제조물이 설계와 제조과정에 아무런 흠이 없는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 또는 취급을 한 경우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용 취급방법 또는 경고를 지시하지 않을 때에는 지시 경고상의 결함이 된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환자가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정확하게 사용하면 위험이 없을 경우 부적당한 사용에서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3-3. 결함의 판단기준

3-3-1.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표준일탈기준이라는 것은 제조물이 『정상의 상태(표준)』로부터 일탈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결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그 제조물을 '정상의 상태'라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표준일탈기준은 주로 제조상의 결함에 관한 사례에서 타당한 기능을 한다.

제조상의 결함의 사례는 제조자가 설계상의 도한 것과 다른 제조물이 제조된 경우이며 설계에 따라 제조자가 의도한 제조물이 제조물의 정상의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설계상의 결함이나 경고상

의 결함의 사례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즉 이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제조물의 정상의 상태인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제조물의 있어야 할 상태를 가지고 정상의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 상태인가라는 가치판단이 개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에 그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면 있어야 할 상태나 표준이라고 한 매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직접 결함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하게 된다.

3-3-2.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소비자기대기준이라는 것은 제조물이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한 경우에 이것을 결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표준일탈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는 판단기준으로서 현재 가장 넓게 쓰이고 있으며 최근의 소비자중심의 사고에도 잘 합치한다.

이 견해는 종래 뮤시의 보증책임이론하에서 제조물이 매수인인 소비자가 기대한 성능이나 품질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나 상업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제 2차 불법 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 402조 A의 주석i에서 엄격책임에 의한 결함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EC지침 제 6조는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제조물의 사용, 제조물이 유통에 놓

여진 시기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람이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 결함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기대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견해는 결함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 이용자 의 제조물의 안전성의 기대와 제조자의 이용자에 의한 사용방법에의 기대의 조화점을 찾는데 있으며 보호되어야 하는 기대는 가장 정당하여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하게 평가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기대기준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결함 판단기준으로서 소비자기대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소비자기대기준을 정하여야 하지만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둘째, 의약품 등 고도의 과학적 지식에 의거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가의 증언(expert testimony)에 의해서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가 증인의 지식에 의거한 기준은 결코 『통상의 소비자』의 기대가 아니다.

셋째, 소비자기대기준 하에서 명백한 위험을 가지는 제조물은 결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통상의 소비자는 명백하게 위험한 제조물이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3-3. 위험효용기준(危險效用基準, risk-utility test)

위험효용기준이라는 것은 제조물이 가지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하여 위험이 효용을 넘는 경우

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대기준과 함께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준이지만 여기에서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위험효용기준의 정식화로 유명한 것은 John W. Wade 교수의 Wade Formula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Wade 교수는 ① 제조물의 유용성과 필요성 ②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손해의 정도 ③ 대체 설계의 가능성 ④ 제조자에 의한 위험회피 가능성 ⑤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 가능성 ⑥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⑦ 제조자에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이라는 7개의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창하고 있다.

한편 판례를 살펴보면 워싱턴주 대법원은 1975년 Seattle-First National Bank v. Taber : 사건판결에서 (i) 제조물에 관한 비용 (ii) 결함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위험의 중대성 (iii) 위험의 제거 또는 최소화의 가능성과 비용 (iv) 제조물의 성질 (v) 결함의 성질등의 5개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또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1984년 Sumnicht v. Toyota Motor Sales Inc. 사건판결에서 (i) 제조시의 업계관행에의 부응정도 (ii) 위험의 명백성 (iii) 원고에 의한 제조물사용의 정도, 손해발생시의 제조물의 사용기간 (iv) 제조물의 유용성이 현저하게 손상되지 않으며 또 현저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제조자의 능력 (V) 제조물의 현재의 설계에 의하여 위험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요소

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위험효용기준은 비교형량해야 할 요소가 다종다양하고, 또 개별사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

따라서 위험효용기준에 의거하여 결합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혹은 망라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웨이드 교수에 의해 제시된 요소가 일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3-4. 바커기준(Barker test)

바커기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소비자기대기준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제조물의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2차적으로 위험효용기준을 사용하여 그때 효용이 위험을 넘는 경우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측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Barker v. Lull Engineering Co. 사건판결에서 “원고는 소비자기대기준이나 위험효용기준중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고, 만일 원고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는 설계상의 결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당해설계의 이익이 그 설계에 내재된 위험을 능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일명 바커(Barker)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엄격책임에 있어서 “부당한 위험”이라는 요건을 배제함과 동시에 1차적으로는 소비자기대기준을, 그리고 소비자기대기준에 의하여 결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적 기준으로서 위험효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大法院은 Barker 事件決定에서一次的으로 ‘의도된 방법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방법에 의한 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그 제품이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安全性을 결하고 있음을原告가 立證한 경우’ 제품에 設計上의 缺陷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Barker기준은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용기준을 단순히 병용했다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① Barker기준은 1차적으로 소비자 기대기준에 의하여 결합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2차적 기준으로서 위험효용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2단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무엇보다도 Barker기준은 위험효용기준에 있어서 위험과 효용의 비교형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고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제조물이 통상적인 소비자의 기대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갖고 있더라도 피고인 제조자는 제조물의 효용이 위험을 상회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Barker기준은 1980년의 알래스카주 대법원이 1980년의 Cater Pillar Tractor Co. v. Beck 사건판결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채택하고 있는 판례는 아직 많지 않다.

4.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4-1. 면책사유의 의의

결함있는 제조물에 기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위험(개발도상의 책임)의 항변인데, 미국에서는 기술수준의 항변(State of the art)이라고 하여 면책사유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기술수준이라 함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성가능성 또는 특정업계에서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달성을 수준을 의미한다.

예컨대, 신약을 개발 판매한 이후에 부작용이 판명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물의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하에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까지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과실책임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제조업자의 기술수준(State of the art)의 항변은 당연히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책임하에서는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과실이 아닌 제조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결함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조업자에 의해 위험의 인식 가능성이나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는 결함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이점에 관한 미국의 각 법원의 견해는 엄

격책임하에서도 역시 제조업자에 의한 기술수준의 항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다수의 주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위 항변을 부정한 판례는 1982년 뉴저지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Beshada v. John-Manville Products 사건외에 소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후 2년이 지나 같은 뉴저지주에서 의약품의 사건에서 『앞의 Beshada 판결의 판시는 의약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술수준의 항변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 미국에서의 기술수준의 항변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여기서는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EU지침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특히 논쟁이 심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4-2. EU지침의 규정

EU지침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다음의 6가지를 열거하여 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제조업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 7조)

- 1)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 한 사실
- 2)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아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결함이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 시킨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사실
- 3)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경제적 목적을 갖고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영업의 목적으로 제조 혹은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4) 공적기관이 정한 강제기준에 따라 제조하였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5)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서는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
- 6)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그 부품이 사용된 제조물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4-3. 면책사유 중 개발위험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 위험에 대하여는 제조업자에게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문제가 면책사유로 논의되는 것이다.

EC지침 제7조(e)에 있는 것처럼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개발위험의 항변문제는 EC지침이 성립될 때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기술수준(State of art)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기술수준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또는 특정업계에서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달성수준을 의미한다.

4-3-1. 개발위험의 항변의 채택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EC지침안 심의 과정에서 각국의 견해가 대립하여 통일적인 형태의 합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즉 EC지침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가맹 각국에서 국내 입법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를 위임하여 둔 것이다.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대립된 견해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정설 : 이 항변을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화하는 의의가 크게 감소하고, 이 항변을 허용해서 새로운 제조물이 가지는 미지의 위험에 의한 사고손해를 소비자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조물의 시장출하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용 쥐(모르모트)의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 2) 인정설 :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예견할 수 없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기업에 예상외의 손해를 초래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제조물에 대한 개발의욕이 상실되어 유용한 제조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어 결국 소비자, 산업계, 모두의 손실로 돌아가며, 또한 배상액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4-3-2. EC지침의 규정과 각국의 입법동향

EU에서는 각국의 의견대립은 타협의 산물로 합의하였다. 즉,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에 의해서는 그 결합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이 지침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7조 e호).

그러나 각 회원국은 지침 7조의 e호와는 달리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에 의해서는 그 결합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규정을 유지하거나 또는 지침 15조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다(15조 1항 b호)라고 규정하여 타협된 것이다.

EC가맹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만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국가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우리나라의 1989년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시안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적 수준으로 당해 결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인하고 있다(3조 2항).

그러나 1999년 7월 13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제조물책임법안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은 반영하고 있다.

생각건대 개발위험의 항변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발위험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제조물의 제조 판매자만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활용도 포함하여 사회전체가 기술개발에 수반되는 손실을 부담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4-3-3.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사유

다른 제조물의 부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이른바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사유’이다.

이것은 부품원재료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항변사유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